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1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4. 25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직제명을 변경하고,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)
- 나.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, 별표 1)
 -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름
- 다.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변경함(안 제5조제2호·제5호)
 - 중앙인사위원회, 기획예산처장관 ⇒ 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
- 라.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(안 제5조제4호)
 -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증빙자료 징구와 장기교육(1개월이상)과정 사비 사용 후 정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- 마.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적용규정을 삭제하고, 「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적용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8조의2, 제16조, 제18조, 제2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그 밖에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- (2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하고, 제4조를 제3조로 하며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중앙인사위원회와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과”로 하고, 같은 조제 4호 중 “영 제18조”를 “영 제8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제5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영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7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”은 “「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근무지내 출장시 여비)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,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거창군 관용차량관리 규칙」 제6조 및 동규칙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4조 (생 략)</p>	<p>제3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</p>
<p>제5조(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.</p> <p>2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영 제18조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.</p> <p>5. 영 제29조제1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동 조 제2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</p>	<p>제5조(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준용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행정안전부장관과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영 제8조의2 -----.</p> <p>5. 영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영 제8조의 2 및 제16조 중 “정부 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”로 본다.</p>	<p><u>및 같은 조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”은 “「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</p>

[별표 1]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(버스)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30,000

비고 :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공무원여비규정”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
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